



# 땅 끝 해 남 소 식

2022년 4월 15일(519호)

## HAENAM NEWS

◆ **군정목표** ◆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

◇ **군정방침** ◇

현장중심 소통행정  
살기좋은 부자농촌  
체류하는 문화관광  
생동하는 지역경제  
감동주는 맞춤형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321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광고·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 조례

◎ 해남군 조례 제3126호 -----	2
◎ 해남군 조례 제3127호 -----	11
◎ 해남군 조례 제3128호 -----	32
◎ 해남군 조례 제3129호 -----	35
◎ 해남군 조례 제3130호 -----	49
◎ 해남군 조례 제3131호 -----	55
◎ 해남군 조례 제3132호 -----	59
◎ 해남군 조례 제3133호 -----	62
◎ 해남군 조례 제3134호 -----	66
◎ 해남군 조례 제3135호 -----	70
◎ 해남군 조례 제3136호 -----	74
◎ 해남군 조례 제3137호 -----	98
◎ 해남군 조례 제3138호 -----	106
◎ 해남군 조례 제3139호 -----	109

### 규칙

- ◎ 해남군 규칙 제1346호 ----- 114
- ◎ 해남군 규칙 제1347호 ----- 118
- ◎ 해남군 규칙 제1348호 ----- 131
- ◎ 해남군 규칙 제1349호 ----- 136
- ◎ 해남군 규칙 제1350호 ----- 138

###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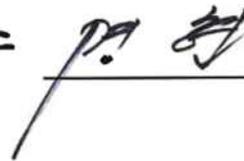
- ◎ 해남군 공고 제1635호 ----- 145

조례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26호

붙임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1부.

##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

관 및 해남군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5.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해남군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정책실명제

선정기준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

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		
③ 사업개요	○ 위 치: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부서장 ○○○ 팀 장 ○○○ 주무관 ○○○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b>&lt;그간 주요 추진내용&gt;</b>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군 수 ○○○ 부군수 ○○○ 부서장 ○○○ 팀 장 ○○○ 주무관 ○○○	
○ 내용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명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습니다.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적습니다.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을 적습니다.
- ⑤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담당 팀장 및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적습니다.
- ⑥ 선정기준 : 제12조 각 호 중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을 적습니다.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적습니다.
- ※ 일시 및 관련자: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신청인 (성명/성별)	
연 락 처	E-mail :  전화번호 :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hwp / pdf 파일 모두 제공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27호

붙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1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26조제6항의 규정”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조(「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4조(「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8조”를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를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로 한다.

제5조(「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과”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으로 한다.

제6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을 “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해남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지·분합

제11조(「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2조(「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116조의2”를 “제130조”로 한다.

제13조(「해남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4조(「해남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해남군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15조(「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한다.

제16조(「해남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해남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운영 등”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전염병”을 “전염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라목 중 “설거일”을 “선거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될돌려”를 “되돌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기호(-) 중 “매주월요일”을 “매주 일요일”로 한다.

제18조(「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우슬정구장”을 “우슬소프트테니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으로 한다.

제19조(「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체육진흥협의회”로, “제14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란”을 “(이하 “협의회”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을 “(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① &lt;삭 제&gt;</p>
<p>제24조(전문) ①·② (생략)</p> <p>③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이 된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p>	<p>제24조(전문)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32조제6항 ----- ----- ----- ----- ----- -----.</p>

제2조(「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p>	<p>제9조(위원회 기능) ① ----- -----</p>

<p>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p> <p>4. ~ 6. (생략)</p> <p>② (생략)</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지방자치법」 제148조----- -----</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3조(「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 ----- ----- ----- ----- ----- ----- ----- ----- -----</p>

제4조(「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풀뿌리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 7. (생략)

제1조(목적) -----  
 -----  
 ----- 제27조 및 제29조  
 -----  
 -----  
 -----  
 -----  
 -----  
 -----.

제2조(정의) -----  
 -----  
 -----.

1. -----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  
 -----  
 -----  
 -----  
 -----.
2. ~ 7. (현행과 같음)

제5조(「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 ----- -----

규정」 제13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제6조(「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개별법령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

제7조(「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예우) ----- -----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 -----.

제8조(「해남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 -----.

제9조(「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남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 ----- ----- -----.

제10조(「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

<p>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u>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지·분합</u></p> <p>4. ~ 7. (생략)</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지방자치법</u>」 제7조제2항에 따른 <u>법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지·분합</u></p> <p>4. ~ 7. (현행과 같음)</p>
---	---

제11조(「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04조</u>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117조 -----</p> <p>-----</p> <p>-----</p> <p>-----</p> <p>-----</p> <p>-----</p> <p>-----</p> <p>-----</p>

제12조(「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관계법령</u>과 「<u>지방자치법</u>」 제116조의2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p>	<p>제1조(목적) ----- <u>관계법령</u>과 「<u>지방자치법</u>」 제130조---</p> <p>-----</p> <p>-----</p> <p>-----</p>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생략)

-----  
-----  
-----.

제3조(적용 범위)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130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해남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u>공무원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u>공무원직장협의회</u>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 ----- ----- ----- -----.</p>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략)
- ②·③ (생략)

1. 「지방자치법」 제102조-----  
-----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해남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법」 제154조-----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	제2조(적용) ----- ----- ----- -----

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  
 -----  
 -----  
 -----  
 -----  
 -----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16조(「해남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u>에 의한 <u>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u>의 <u>선임 및 운영</u>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u>결산검사위원회</u>-----                      ----- <u>운영 등</u>-----                      -----.</p>
<p>제2조(위원의 정수) <u>위원의 정수</u>는 4인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동의를 얻어 1인을 추가할 수 있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u>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u>-----                      -----.</p>

제17조(「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용의 제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공중에 위대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u>전염병</u>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p> <p>2. ~ 7. (생략)</p>	<p>제5조(사용의 제한) ----- ----- ----- -----.</p> <p>1. ----- ----- <u>전염성</u> ----- -----.</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p> <p>1. 전액감면</p> <p>가. ~ 다. (생략)</p> <p>라.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u>선거일</u> 후 3개월 내 한 차례에 한한다)</p> <p>마. · 바. (생략)</p> <p>2. ~ 4. (생략)</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p> <p>1.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 ----- <u>선거일</u> ----- -----</p> <p>마. · 바.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u>되돌려</u> 준다.</p> <p>1. 2. (생략)</p> <p>②·③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 <u>되돌려</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18조(「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우슬경기장, 우슬체육관, 우슬동백체육관, 금강체육관, 우슬테니스장, <u>우슬정구장</u>, 궁도장, 축구 전용구장, 다목적생활체육관, 우슬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u>텔레비전</u>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시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 ----- -- <u>우슬소프트테니스장</u>----- ----- ----- -----.</p> <p>2. ----- ----- --(<u>텔레비전</u> ----- ----- -----.</p>

제19조(「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u>체육진흥협의회</u> (이하 “<u>협의회</u>”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u>체육진흥기금</u>(이하 “<u>기금</u>”이라 한다)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체육진흥협의회</u>----- ----- -----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u>체육진흥기금</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 -----.</p>
<p>1. “<u>체육진흥협의회</u>”란 해남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p>	<p>1. ----- (<u>이하 “<u>협의회</u>”라 한다</u>)란 ----- ----- -----.</p>
<p>2. “<u>체육진흥기금</u>”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p>	<p>2. ----- (<u>이하 “<u>기금</u>”이라 한다</u>)이란 ----- -----.</p>
<p>3. 4. (생략)</p>	<p>3. 4. (현행과 같음)</p>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현행>

앞면

No. _____	<div data-bbox="606 510 831 568" data-label="Section-Header"><h3>사 용 권</h3></div> <div data-bbox="367 595 568 831" data-label="Text"> <p>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용기간 :</p> </div> <div data-bbox="906 490 1190 840"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49 880 903 931" data-label="Text"><p>해남군수 직인</p></div>	

뒷면

1. 개장시간은 : 06:00-21:00까지입니다.
2. 1일 1회 사용가능 합니다.(2회사용 불가)
3.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1월1일, 설·추석 연휴, **매주월요일**
4. 사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간 1/2 미만 경과된 경우
  - 잔여일수의 일할계산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앞면

No. _____	<div data-bbox="606 510 831 568" data-label="Section-Header"><p>사 용 권</p></div> <div data-bbox="367 595 569 831" data-label="Text"> <p>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용기간 :</p> </div> <div data-bbox="906 490 1190 840" data-label="Image"> </div>	
<b>사 용 권</b>		
해남군수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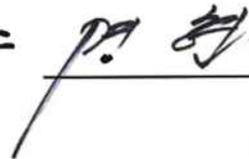
뒷면

1. 개장시간은 : 06:00-21:00까지입니다.
2. 1일 1회 사용가능 합니다.(2회사용 불가)
3.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1월1일, 설·추석 연휴, **매주 일요일**
4. 사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간 1/2 미만 경과된 경우
  - 잔여일수의 일할계산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28호

붙임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두 자녀**”를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을 “**(장려금 지원 금액 및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자금과 장려금 지원대상에 동시 해당하는 때에는 중복되는**”을 “**학자금 지원대상에 중복 해당되는**”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은 사업연도 기준 만8세 이상에서 만19세 생일에 이르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u>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u> 가정에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④ (생 략)</p>	<p>제4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p> <p>① (생 략)</p> <p>② 지원기간은 「<u>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u>」 제4조에 따라 양육비 지급이 끝난 이후 <u>장려금 신청월부터 자녀가 만 19세 생일에 이르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u></p> <p>③ 장려금 지원대상 자녀가 <u>학자금과 장려금 지원대상에</u> 동시 해당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p>	<p>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및 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원대상은 <u>사업연도 기준 만8세 이상에서 만19세 생일에 이르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u></p> <p>③ ----- 학자금 지원대상에 중복 해당되는 ----- ----- ----- --.</p>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29호

붙임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을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으로, “고용확대, 권익증진”을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을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군수는”을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 제목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계획의 연도별”을 “연도별 시행계획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인구정책과장”을 “인구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해남군의회 의장이”를 “해남군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解囑)”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3(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4(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의5(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제4호가목 중 “보건 및 안전,”을 “보건, 안전 및”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업수행)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청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2.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실비를”을 “회의수당을”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홍보) 군수는 청년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 회의, 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등)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

1. “청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

3. -----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  
-----  
-----.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삭 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 ① (생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4.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 연도별 시행계획 -----
- 2. 연도별 시행계획의 -----
- 3.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

1. 해남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 4.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 호선(互選)한다.

② -----  
-----  
----- 인구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

③ -----  
-----  
-----  
-----.

1. 해남군의회의에서 -----  
-----
2.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9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  
----- 해촉(解  
屬)-----.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3(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4(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신 설>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 나. (생략)
- 5. · 6. (생략)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의5(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 가. 보건, 안전 및 -----  
-----  
-----
- 나. (현행과 같음)
- 5.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수행) 군수는 제14조

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청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2.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군수

제16조(실비보상) ① 청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사업
- 6. ~ 8. (생략)

② (생략)  
<신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수당) ① -----  
 -----  
 -----  
 ----- 회의수당을  
 -----.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 <삭제>
-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홍보) 군수는 청년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

<신 설>

제18조 (생 략)

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 회의, 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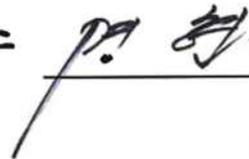
제20조(포상 등)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0호

붙임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성인의 센터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지도 목적의 경우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제2호 중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질환자**”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6조) 제1항제3호 중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대 또는 임대**”를 “**임대**”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9조) 중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별표,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용범위) ① (생략)</p> <p>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사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성인의 센터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지도 목적의 경우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u></p>
<p>제8조(사용료) ① (생략)</p> <p>② <u>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u></p> <p>③ <u>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u>군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해남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u></p> <p>2.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lt;삭제&gt;</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u>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u></p>	<p>&lt;삭제&gt;</p>

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시설물이 고장, 훼손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일 전까지 사용을 철회한 경  
우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1조 (생 략)

제12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 1. (생 략)
- 2.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3. 4. (생 략)

제13조·제14조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0조(사용의 제한) -----  
-----  
-----  
-----.

- 1. (현행과 같음)
- 2. ---- 질환자-----  
-----

3. 4. (현행과 같음)

제11조·제12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2조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6. (생략)

② (생략)

제17조·제18조 (생략)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13조-----  
-----
- 4. ----- 임대-----  
-----  
-----
- 5.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제16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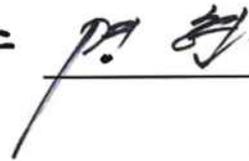
제17조(준용) -----  
-----  
-----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1호

붙임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전염성질환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을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 기본법</u>」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해남군이 설치한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기본법</u>」 제18조-----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청소년 문화의 집</u>”이란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10조 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 수련 시설을 말한다.</li> <li>3. “<u>청소년단체</u>”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u>청소년기본법 시행령</u>」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이란 「<u>청소년활동 진흥법</u>」 제10조제1호 <u>다목</u>----- ----- -----.</li> <li>3. ----- ----- 「<u>청소년 기본법 시행령</u>」----- -----.</li> </ol>
<p>제8조(사용제한) ① (생 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p>	<p>제8조(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 2. ~ 5. (생략)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낮출 수 있다.

- 1. ~ 4. (생략)
- 5.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 6. (생략)

③ (생략)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  
-----.

- 1. 전염성질환자-----  
-----
-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 5.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  
-----
- 6.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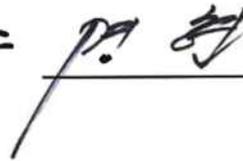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2호

붙임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 승인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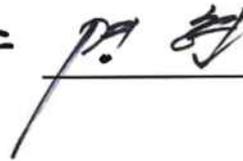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3호

붙임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1부.

##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농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냉방물품 등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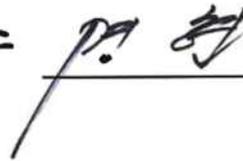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4호

붙임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남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 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

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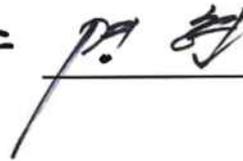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5호

붙임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민의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민의상조례”를 “해남군민의 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상(이하 “군민의상”이라 한다)을”을 “상을”로 한다.

제2조 중 “군민의 상”을 “해남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으로, “포함한다)또는”을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군민의상”을 “군민의 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3분의 2가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제4조의3제1호 중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선고”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민의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해남군민의 <u>상(이하 “군민의상”이라 한다)</u>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상대상자) <u>군민의 상</u>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해남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예술의 창달, 군민화합, 미풍양속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을 <u>포함한다</u>)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p> <p>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생략)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한 읍·면장 및 유관기관단체장은 추천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상자 결정시 <u>군민의상</u>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p>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민의 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상을</u> ----- ----- -----.</p> <p>제2조(수상대상자) <u>해남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u>----- ----- ----- ----- ----- <u>포함한다</u>) 또는 ----- --.</p> <p>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군민의 상</u> ----- -----</p>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결정)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수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4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자
- 2. 3. (생략)

-----  
--.

제4조(수상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단, 3분의 2가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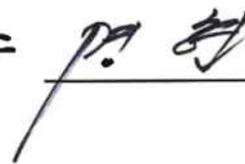
제4조의3(결격사유) -----  
-----  
-----.

- 1. ----- 선고 -----  
-----
- 2. 3. (현행과 같음)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6호

붙임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를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평생교육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에 맞추는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사업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명 가능한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사람 제3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군수는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이용권의 사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군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군수가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2장의 제목 “평생교육협의회”를 “평생교육이용권”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3장 평생교육이용권”을 삽입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남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해남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항을 협의·조정하기 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을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시설”을 “군 지역 평생교육기관·시설”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3장제8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조(중전의 제8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10조(중전의 제11조) 제1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을 경우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해남군 평생학습관”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해남군 평생학습관”을 삽입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4조) 중 “법 제21조의 규정”을 “법 제21조”로, “위하여 해남군”을 ““해남군”으로, “지정·운영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조(중전의 제14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조(중전의 제14조) 제12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치하여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8조) 중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3장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4장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21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를 “(시설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거나, 시설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21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습관 시설의 사용자가”를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습관 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중전의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중전의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비문해자의 학습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중전의 제26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사료는 「별표 5」”를 “강사료는 별표 5”로 한다.

제5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우수 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군수는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 발굴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정 인증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 다음에 “제5장 문해교육”을 삽입한다.

제25조 다음에 “제6장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인증제”를 삽입한다.

제27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8조) 중 “제16조”를 “제14조”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9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1조(중전의 제32조) 중 “「해남군 포상조례」”를 “「해남군 포상 조례」”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평생학습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해남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평생교육법」(이하“법”</p>	<p style="text-align: center;"><u>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 설>

②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에 맞추는 평생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남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 설>

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3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신 설>

<신 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사람

제3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군수는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4(이용권의 사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군민(이하 “이용자” 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군수가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
3.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실시
4.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등
6.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및 교재·교구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 제3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입비 등

7.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신 설>

제5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②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사업
-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4. 그 밖에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장 평생교육이용권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록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남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해남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생략)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의장이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생략)

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시설을 운영하는 자

4. 기타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등 평생

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 “항을 협의·조정하기 위” 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해남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6조(구성) ① -----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② ----- 서로 뽑는다.

③ ----- 사람-----.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현행과 같음)

3. 군 지역 평생교육기관·시설----- 사람

4. 그 밖에-----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0조(해촉) 의장은 협의회의원  
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원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생략)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원  
의원 다음 각 호의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  
다

1. (생략)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

----- 풍부한 사람

④ -----  
----- 1명-----  
-----  
-----.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8조(해촉) -----  
-----  
-----  
-----.

1. (현행과 같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을 경우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1 이상-----

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④ (생략)

⑤ 협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해남군 평생학습관

<신설>

② -----  
-----  
-- 개 의(開議)-----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그  
렇지 않다.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삭제>

<삭제>

제4장 해남군 평생학습관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6. ~ 10. (생략)
11.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2. (생략)

제17조(운영) ① (생략)

- ② 군수는 학습관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 법 제21조-----  
-----  
----- “해남군 -----  
-----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4조(기능) -----

- 사업-----.
1. ~ 4. (현행과 같음)
  - <삭제>
  5. ~ 9.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삭제>

10.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15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 제1항-----  
-----  
-----  
-----.
- ③ -----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16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사용)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관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어야한다. 다만, 시설사용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신 설>

-----  
-----  
----- 들  
수 있다.

제16조(운영비 등 지원) -----  
제14조-----  
-----  
-----  
-----.

<삭 제>

<삭 제>

제17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거나, 시설 일부를 일시적으로

학습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제22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학습관 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1. · 2.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제23조 · 제24조 (생략)

<신설>

제25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 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 · 제20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제25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비문해자의 학습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
-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생략)

<신 설>

제26조(강사료 지급 기준) ① 제25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료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하며 강사료는 「별표 5」와 같다

3. ---- 사유 없-----  
-----  
-----

4. -----  
----- 적합하지 않다고 -----  
-----

5. (현행과 같음)

제26조(우수 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군수는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 발굴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정 인증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강사료 지급 기준) ① 제21조-----  
-----  
-----.

② -----  
-----  
-----  
----- 강사료  
는 별표 5-----

제27조 (생 략)

제4장 보칙

<신 설>

<신 설>

<신 설>

제28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제1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제31조 (생 략)

제32조(포상)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해남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23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삭 제>

제5장 문해교육

제6장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인증제

제7장 보칙

제27조(사업의 공동추진) -----

제14조-----

-----

-----

-----

-----

-----

-----

-----

-----

----- 범위-----

-----

-----

제29조·제30조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와 같음)

제31조(포상) -----

----- 「해

남군 포상 조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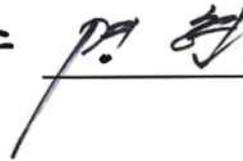
----- <삭 제>

정할 수 있다.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7호

붙임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

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 2. (생략)
-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

---

<삭제>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

-----2023년12월 31일-----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운영을 하거나 하려는 자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  
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  
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  
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  
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  
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  
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  
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  
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  
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  
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  
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  
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  
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  
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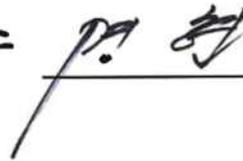
- 1. -----  
-----  
-----  
----- 250원
- 2. -----  
-----  
----- 500원

② (현행과 같음)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8호

붙임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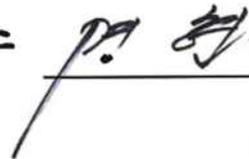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해남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해남군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제3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4. 1.)에서  
의결된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조례 제3139호

붙임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  
한 조례 1부.

##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와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영농교육·컨설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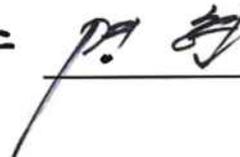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2. 3. 4.)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346호

붙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1부.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제1조(「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32조”로 한다.

제2조(「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을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해남군사무인계인수규칙」의 개정) 해남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제28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 ----- -----.

제2조(「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 ----- ----- ----- ----- ----- ----- ----- ----- -----.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2. 3. 4.)에서 의결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347호

붙임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다자녀행복카드”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제3조(증명자료)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및 발급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자녀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기준일은 10일로 하며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
3.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 지급하며,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매달 10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제5조(학자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학자금 지원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자금은 당해 연도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학자금을 납부하고 학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휴학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장이 학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유예처리한 때에는 학교장이 증명해 준 확인서를 통하여 다음 학기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4. 학자금지원 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을 중지한다.
5. 학자금 지원 중지의 사유가 없어져 학업을 계속할 경우 잔여 지원횟수 까지 지원 할 수 있다.
6.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대 150 만원을 지원한다.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 중 읍·면장은 신청대장을 군수는 지원 및 환수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자격 변동확인) 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자녀가정의 관외 전출 및 지원 자격 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자녀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자녀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출생순위
				( )자녀 중 ( )째
				( )자녀 중 ( )째
				( )자녀 중 ( )째
				( )자녀 중 ( )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양육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접 수 자 확 인 사 항	-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관내 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기타(비고 :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접수자 (읍·면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읍·면 담당팀장)	(소속)	(직급)	(성명) (인)
기타의견			

(뒷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남군은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성명, 주소, 성별, 연락처, 계좌정보	다자녀 양육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주민등록번호	다자녀 양육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 고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동의자) :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자녀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지원대상 자녀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출생순위	( )자녀 중 ( )째
	학과정보	_____대학교 _____학과 _____학년		비고

■ 첨부서류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자금 납입 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교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 대학교 학자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접수자 확인사항	-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접수자 (읍·면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읍·면 담당팀장)	(소속)	(직급)	(성명) (인)
기타의견			

(뒷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남군은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대상자녀 : 성명, 생년월일, 학과정보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주민등록번호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제3자 제공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

제공기관	제공항목	수집 · 이용 목적
행정기관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대상자녀 : 성명, 생년월일, 학과정보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 고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신청대장

【읍면 :            】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신청인			지원대상자			주 소	연락처	거주기간 (년, 월)	전 출 사 항		비 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다자녀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출생순위				전출일	전출지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장**

읍면	일련 번호	신청인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년 월)	주 소 (전화번호)	지원내역					비 고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출생 순위			신청 일자	지급 일자	금 액	은행	계좌번호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자녀가정 대학교학자금 지원 신청대장

【읍면 :            】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신청인			지원대상자			주 소	연락처	학과정보			비 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다자녀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출생순위			학교명	학과	학년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다자녀가정 대학교학자금 지원 대장**

읍면	일련 번호	신청인			지원대상자			누적 지원횟수	잔여 횟수	지원내역						비 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다자녀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출생 순위			신청 일자	지급 일자	금 액	은행	학교 계좌번호	학교 연락처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환수대상자 관리대장

(단위 : 원)

일련 번호	지원내용	환수 결정일자	환수 결정사유	환수금액	지원대상자			신청인(보호자)			환수 완료일자	환수 완료여부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성 명	연락처	자녀와의 관계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2. 3. 4.)에서 의결된  
해남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348호

붙임 해남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해남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을 “해남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남군민의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해남군민의 상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3조에 의거”를 “해남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해남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u></p>	<p><u>해남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해남군민</u> <u>의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해남군민</u> <u>의 상 조례</u>----- ----- -----.</p>
<p>제3조(추천구비서류) <u>조례</u> 제3조 에 의거 수상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 추어야 한다.</p>	<p>제3조(추천구비서류) <u>해남군민의</u> <u>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 제 <u>3조에 따라</u> ----- -----.</p>
<p>1. ~ 5. (생 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심사기준)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p>	<p>제4조(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u> <u>견인 신고</u>를 받은 자</p>	<p>1. ----- <u>선고</u>----- -----</p>
<p>2. · 3. (생 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상패와 부상문안) <u>조례</u> 제7 조에 의한 상패와 부상 문안은 각각 <u>별지 제4호 서식</u>과 <u>별지</u> <u>제5호서식</u>에 따른다.</p>	<p>제6조(상패와 부상문안) ----- ----- --- <u>별지 제4호서식</u>----- -----.</p>

[별지] < **현 행** >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2. 3. 4.)에서 의결된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349호

붙임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회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2022. 3. 4.)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15일

해남군수



해남군 규칙 제1350호

붙임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해남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를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결과”를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결과”로, “7일”을 “20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10. (생략)</p> <p>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p> <p>1.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 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 ~ 10. (현행과 같음)</p> <p>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 ----- ----- ----- -----.</p> <p>1. (현행과 같음)</p>

2. 법 제96조제5항(같은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 6. (생략)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

2. -----  
-----  
---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  
-----  
-----

3. ~ 6. (현행과 같음)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  
-----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결과 -- 20일 ----- 날 세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해남군 소재 사업장)

(단위: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 (a)	① 비과세면적				과세면적 (c) (a-b)	② 정당세액 (d)	가납부세액 (e)	납부일자	차인세액 (f) (d-e)
				가속사	구내식당	기타	소계 (b)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해남군 소재 사업장)

(단위: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연면적 (a)	① 비과세면적				과세면적 (c) (a-b)	② 정당세액 (d)	가납부세액 (e)	납부일자	차인세액 (f) (d-e)
				가속사	구내식당	기타	소계 (b)					

공 고

해남군 공고 제2022 - 1635호

##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5.

해 남 군



연번	신청인	신청지			면적(m <sup>2</sup> )		용도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1	농업회사법 인 유한회사 실000프	계			8,910	4,950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 양계사)
		화산면 율동리	861-9	임야	5,567	3,622	
		화산면 율동리	산1	임야	3,343	1,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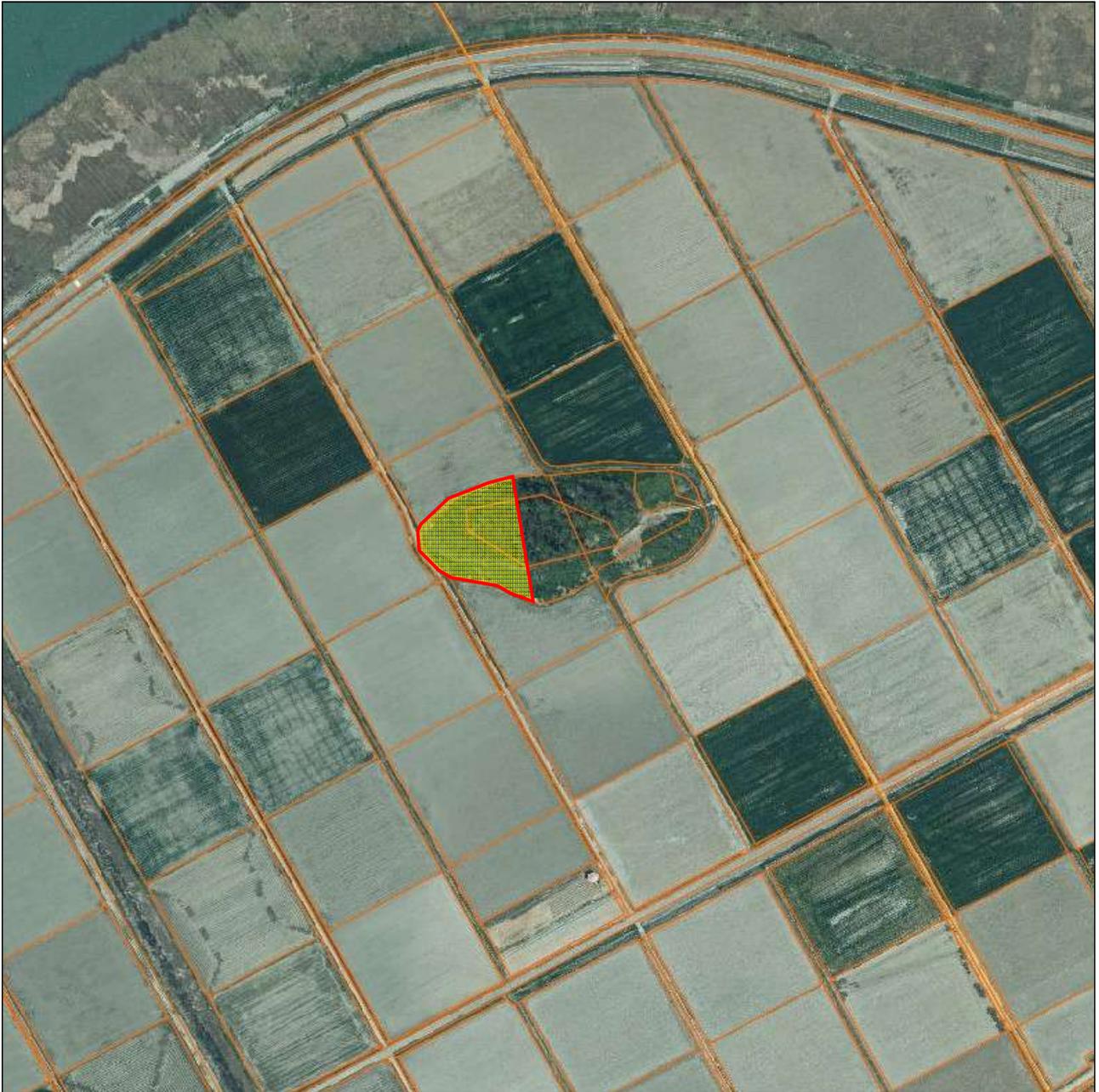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 공고기간: 2022. 4. 6. ~ 2022. 4. 20.

### ○ 이의신청 방법

-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4월 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자(1. 가옥의 소유자,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민, 공장의 소유자,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는 위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해남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5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

※ 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의 의견수렴은, 산지의 전용면적이 30,000㎡ 이상에만 해당되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 사업지 인근 묘지 및 농지등의 피해방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공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치도



전남 해남군 화산면 울동리 861-9임, 산1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5.12.30.>

###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대상사업	사업명(사업목적)			
	사업자성명(법인명)			
	사업자주소			
	사업소재지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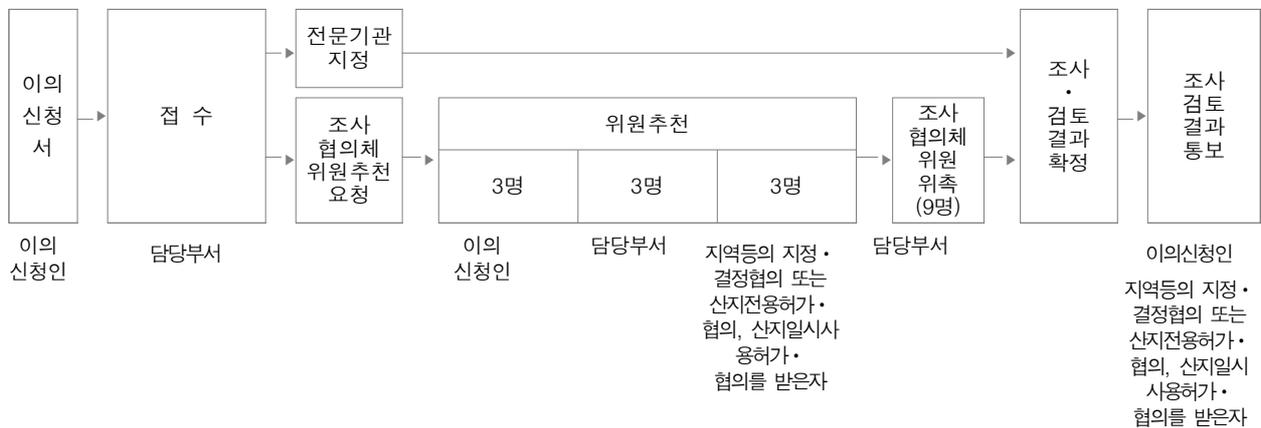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